

자동차 판금정비공에게 발생한 이명 및 청력장애

성별	남	나이	33세	직종	판금공	직업관련성	높음
----	---	----	-----	----	-----	-------	----

1 개 요

권 ㅇ ㅇ(33세, 남)는 1996년 3월에 자동차정비업체에 입사하여 판금작업을 하던 중 이명이 발생하였고 2000년 6월 갑자기 이명과 이통이 심하게 나타나 돌발성난청으로 진단받았다.

2 작업환경

권 ㅇ ㅇ 가 근무하였던 자동차정비업체의 기존에 소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 한 적이 없었다. 직업병심의를 위해 소음을 측정한 결과 권○○가 근무한 판금작업 (망치, 돌그라인더 등의 장비로 작업이 이루어짐)의 지역 소음 수준은 86.3dBA이었 다. 그러나 이 공정은 작업량이 감소하여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.

3 의학적 소견

업무상질병 심의를 위해 2000년 8월 23일 연구원에서 권 이 이에 대해 청력검사 및 중이검사를 실시하였다. 순음청력검사에서 경도의 감각신경성난청 소견을 보였다. 평 균 청력손실은 6분법상 우측이 20.8, 좌측 24.2dBHL 이었다. 고막운동성검사에서는 정상 고막운동의 형태를 보이는 A형이었으며, 등골근 반사검사에서는 좌우측 모두 500Hz에서 2,000Hz까지 자극소리와 같은 쪽과 반대쪽 모두 정상청력인 귀에서 보이 는 등골근 반사 역치 소견을 보였다.

4 결 론

권 ㅇ ㅇ 의 청력장애와 이명은

- ① 중이검사에서 중이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
- ② 순음청력검사에 의한 청력손실은 산재보상 기준인 40dB 미만이나.
- ③ 작업장의 소음이 노출기준을 초과하고 있고
- ④ 순음청력검사의 air-bone gap이 이명으로 인해 역전되어 있으며
- ⑤ 어음청력검사, 이명검사 및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가 골도 순음청력검사 결과와 일치하므로

청력역치 손실은 보상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, 이명은 지속적인 소음 노출로 의해 발생한 업무상질병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.